

2025 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
3. 아울러 평가불가 기관과 평가결과가 '미흡'인 일부 지표에 대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통보 평가지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노인인권보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 인력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노인인권보호
 <시설>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건강관리
 - ※ 등급표기 방법
 - 정기평가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 수시평가 :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등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
 - 평가등급(5등급)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입소시설10인미만)

시군구 :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 요양 기관명	장기요양기관 기호	급여 종류	점수 (등급)	기관 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가점	
울산한울노인요양센터	13111000147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62.93	22.6	10.5	18.8	10.4		
		정기 D							
	평가 지표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건강관리	미흡(0점)	수급자 건강관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2026년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기관 평가불가기관 통보서

(정기)

(입소시설10인미만)

시군구 : 울산광역시 중구

연번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	평가불가사유
1	A+백정애건강실버타운	131110002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평가대상없음

2026년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